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395호 2014. 2.21 (금요일)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4-14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58차) 2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4-114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
- 하동군 공고 제2014-115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
- 하동군 공고 제2014-122호 하동군 공인 폐기 공고 50
- 하동군 공고 제2014-140호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모집 및 선발계획 51

회 람									
----------------	--	--	--	--	--	--	--	--	--

하동군 고시 제2014 - 14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58차)

도로명주소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2. 6.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개치미동길 108 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8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4)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7.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도로명주소 고시조서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미정리 726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개치미동길 108	20070618	개치와 미동의 마을명을 합성하여 도로명에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110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화포길 67	20070618	화포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동리 490-6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동상신길 22-2	20070618	정동과 상신의 자연마을명을 도로명에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리 1469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중서길 133	20070618	중서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종화리 산66-3, 산66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1443-327	20070702	하동군 옥종면과 산청군 단성면의 첫글자를 사용하여 도로명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 1037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큰동네길 7	20080402	마을의 중심을 지나는 주도로로 금남면의 큰동네라는 의미로 큰동네길로 명명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정금리 578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신촌도실길 61	20090302	골짜기의 옛지명에서 유래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산86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경충로 493-36	20090702	정기룡 장군 추모 사당을 지나가는 도로로 지역의 역사성 반영	

하 동 군 공 보

(4) 제 395 호

하동군 공고 제2014-114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2. 제안 이유
 - 천부농만부촌사업 마무리에 따른 '14년도 농정시책 방향 반영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처우개선방안 이행과 보건담당공무원 사기진작 도모
3. 주요 골자
 -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소관사무 조정(조례안 제9조 제2호)
 - 천부농만부촌 Green하동 육성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에 관한 사항
→부농 육성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에 관한 사항
 - 농업정책과장의 분장사무 조정(규칙안 제9조의 별표 2)
 - 천부농 만부촌 Green하동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부농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 읍장 및 면장의 직급 조정(규칙안 제12조의 별표 5)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및 지방보건사무관 직렬 확대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3월 3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055-880-2153, FAX 055-880-2159, e-mail:borisu656@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4. 2. .
제 출 자 : 하동군수

1. 개정이유

- 천부농만부촌사업 마무리에 따른 '14년도 농정시책 방향 반영
*희망농정365프로젝트

2. 주요내용

-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소관사무 조정(안 제9조 제2호)
 - 천부농만부촌 Green하동 육성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부농
육성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등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 라.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4. 02월중 / 20일간
 - 나) 예고방법 : 하동군 공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
 - 2) 규제심사
 - 3) 비용추계
 - 4) 성별영향분석 평가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를 “천부농 만부촌 Green하동 육성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을 “부농 육성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소관사무)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p> <p>1. 농업정책, 농업인 지원 및 농가경영 안정에 관한 사항</p> <p>2. 천부농 만부촌 Green하동 육성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u>에 관한 사항</u></p> <p>3. ~ 12. (생략)</p>	<p>제9조(소관사무)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부농 육성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u>에 관한 사항</u></p> <p>3. ~ 12. (현행과 같음)</p>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4. 2. .
제 출 자 : 하동군수

1. 개정이유

- 천부농만부촌사업 마무리에 따른 14년도 농정시책 방향 반영
*희망농정365프로젝트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처우개선방안 이행과 보건담당공무원 사기진작 도모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1940(2013.8.20.)

2. 주요내용

- **농업정책과장의 분장사무 조정(안 제9조의 별표 2)**
 - 천부농 만부촌 Green하동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부농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 **읍장 및 면장의 직급 조정(안 제12조의 별표 5)**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및 지방보건사무관 직렬 확대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해당없음

나. 합 의 : 기획감사실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4. 02월중/20일간.

나) 예고방법 : 하동군 공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

2) 규제심사

3) 비용추계

4) 성별영향분석 평가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농업정책과장 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10) 제 395 호

[별표 2]

실과명	분장사무
농업정책 과장	나 부농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1 농업경영 개선지도
	2 농작물별 소득 조사 분석
	3 농업경영 컨설팅
	4 부농 육성사업
	5 FTA 대책 및 지원사업
	6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7 농업인용자이전보조금지원사업
	8 농업인정보화사업
	9 지자체협력사업
	다 축산행정 및 시설물,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1 한우산업 육성
	2 낙농산업 육성
	3 양계산업 육성
	4 양봉,토봉산업 육성
	5 기타 가축 육성
	6 축산물 브랜드 육성
	7 조사료 생산 기반조성 및 장비지원
	8 가축시장 관리
	9 초지조성 관리
	10 가축 인공수정소 개설 및 관리
	11 가축통계
	12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
	13 한우개량 및 등록사업
	14 종축.종돈장 관리
	15 축산재해
	16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
	라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에 관한 사항
	1 가축방역 및 약품지원 사업
	2 가축 질병예찰 및 병성감정
	3 공수의 지도 감독
	4 공동방제단 운영
	5 축산분뇨 처리사업
	6 양돈 산업 육성
	7 가축병원 지도감독
	8 도축장육가공 관리
	9 정착촌 지도감독
	10 축산물 위생
	11 반려 및 유기동물 관리
	12 가축전염병 발생축 살처분 및 보상
	13 축산환경개선

[별표 5]

읍·면장의 직급(제12조 관련)

읍·면사무소명	직 위	직 급	비 고
하동읍사무소	하동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화개면사무소	화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악양면사무소	악양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적량면사무소	적량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횡천면사무소	횡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고전면사무소	고전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금남면사무소	금남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금성면사무소	금성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진교면사무소	진교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양보면사무소	양보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북천면사무소	북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청암면사무소	청암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옥종면사무소	옥종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하 동 군 공 보

(12) 제 395 호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별표2]	
실과명	분장사무	실과명	분장사무
농업정책과장	나 천부농만부촌 Green하동 육성사업에 관한사항	나 부농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1 농업경영 개선지도	1 농업경영 개선지도	
	2 농업인 정보화 촉진	2 삭제	
	3 농작물별 소득 조사 분석	3 농작물별 소득 조사 분석	
	4 농업경영 컨설팅	4 농업경영 컨설팅	
	5 천부농·만부촌 육성사업	5 부농 육성사업	
	6 FTA 대책 및 지원사업	6 FTA 대책 및 지원사업	
	7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7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8 농업인용자이전보조금지원사업	8 농업인용자이전보조금지원사업	
	9 농업인정보화사업	9 농업인정보화사업	
	10 지자체협력사업	10 지자체협력사업	
	다 축산행정 및 시설물,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다 축산행정 및 시설물,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1 한우산업 육성	1 한우산업 육성	
	2 낙농산업 육성	2 낙농산업 육성	
	3 양계산업 육성	3 양계산업 육성	
	4 양봉,토봉산업 육성	4 양봉,토봉산업 육성	
	5 기타 가축 육성	5 기타 가축 육성	
	6 축산물 브랜드 육성	6 축산물 브랜드 육성	
	7 조사료 생산 기반조성 및 장비지원	7 조사료 생산 기반조성 및 장비지원	
	8 가축시장 관리	8 가축시장 관리	
	9 초지조성 관리	9 초지조성 관리	
	10 가축 인공수정소 개설 및 관리	10 가축 인공수정소 개설 및 관리	
	11 가축통계	11 가축통계	
	12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	12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	
	13 한우개량 및 등록사업	13 한우개량 및 등록사업	
	14 종축·종돈장 관리	14 종축·종돈장 관리	
	15 축산재해	15 축산재해	
	16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	16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	
	라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에 관한 사항	라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에 관한 사항	
	1 가축방역 및 약품지원 사업	1 가축방역 및 약품지원 사업	
	2 가축 질병예찰 및 병성감정	2 가축 질병예찰 및 병성감정	
	3 공수의 지도 감독	3 공수의 지도 감독	
	4 공동방제단 운영	4 공동방제단 운영	
	5 축산분뇨 처리사업	5 축산분뇨 처리사업	
	6 양돈 산업 육성	6 양돈 산업 육성	
	7 가축병원 지도감독	7 가축병원 지도감독	
	8 도축장육가공 관리	8 도축장육가공 관리	
	9 정착촌 지도감독	9 정착촌 지도감독	
	10 축산물 위생	10 축산물 위생	
	11 반려 및 유기동물 관리	11 반려 및 유기동물 관리	
	12 가축전염병 발생축 살처분 및 보상	12 가축전염병 발생축 살처분 및 보상	
	13 축산환경개선	13 축산환경개선	

하 동 군 공 보

(13) 제 395 호

현 행				개 정 안			
[별 표 5]				[별 표 5]			
읍·면 사무소 명	직 위	직 급	비 고	읍·면 사무소 명	직 위	직 급	비 고
하동읍 사무소	하동 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하동읍 사무소	하동 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화개면 사무소	화개 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화개면 사무소	화개 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약양면 사무소	약양 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약양면 사무소	약양 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적량면 사무소	적량 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적량면 사무소	적량 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횡천면 사무소	횡천 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횡천면 사무소	횡천 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고전면 사무소	고전 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고전면 사무소	고전 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금남면 사무소	금남 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금남면 사무소	금남 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금성면 사무소	금성 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금성면 사무소	금성 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진교면 사무소	진교 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진교면 사무소	진교 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양보면 사무소	양보 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양보면 사무소	양보 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북천면 사무소	북천 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북천면 사무소	북천 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청암면 사무소	청암 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청암면 사무소	청암 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옥종면 사무소	옥종 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옥종면 사무소	옥종 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99호, 2013.12.4,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자치제도과) 02-2100-376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59조·제90조와 제1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총액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2항의 총액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총액인건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장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12.4>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 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같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 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하 동 군 공 보

(16) 제 395 호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13.12.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

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기구와 정원규칙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7.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하 동 군 공 보

(18) 제 395 호

정부3.0, 국민과의 약속



안 전 행 정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처우개선방안 시달

1. 항상 우리 부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3. 7. 30 제3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처우 개선방안 및 지자체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시달('13. 8. 14 전달회의 기 실시)하오니 각 시도 주관으로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부처 합동 점검 예정

3. 아울러, 시도에서는 세부추진계획(시·군·구 계획취합)을 '13. 8. 30(금)까지 우리 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합서식 : 별도 송부

붙임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처우개선방안 및 지자체 조치사항 1부, 끝.

안전행정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인사과장), 부산광역시(정책기획담당관), 부산광역시(총무과장), 대구광역시(정책기획관), 대구광역시(총무인력과장), 인천광역시(정책기획관), 인천광역시(총무과장), 광주광역시(창조도시정책기획관), 광주광역시(총무과장), 대전광역시(총무과장), 울산광역시(기획관), 울산광역시(총무과장), 세종특별자치시(인사조직담당관), 경기도지사(기획담당관), 경기도지사(인사과장), 강원도지사(총무과장), 강원도지사(자치정책과장), 충청북도지사(총무과장), 충청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 충청남도지사(총무과장), 충청남도지사(자치행정과장), 전라북도지사(정책기획관), 전라북도지사(행정지원관), 전라남도지사(인력관리과장), 경상북도지사(정책기획관), 경상북도지사(인재양성과장), 경상남도지사(정책기획관), 경상남도지사(인사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총무과장)

주무관	장익상	행정사무관	나채목	서기관	박경태	자치제도과장	전결 2013. 8. 20. 이법석
협조자	지방공무원과장	이성민					
시행	자치제도과-1940	(2013. 8. 20.)	접수	정책기획관-7930	(2013. 8. 20.)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3호				/ http://www.mospa.go.kr		
전화번호	02-2100-3769	팩스번호	02-2100-4227	/ kantjang@mospa.go.kr	/ 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2. 복지담당공무원 처우 개선 방안

1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

① 인사상 사기진작 강화

- 지난 3.29 시행 「지자체 사회복지인력운영 개선대책」에 따라, 특수
업무수당 3만원(복지사 자격증 가산금 3만원 별도) → 7만원 인상(6월)
- 지자체별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지급가점 부여, 전보희망부서
우선배치, 정기포상 우선포함 등 다각적 대책 추진 중
- 다만, 시군구 복지 관련 과장 및 읍면동장 직위가 행정직 중심
(81%)으로 운영되어 승진기회 제약
- 민원을 응대하는 현장부서(읍면동 창구, 시군구 통합조사팀)에 장기
근무해야함에 따라 사기 저하
- * 시군구 전체 복지관련 5급 과장 및 읍면동장 직위 4,094개 중 785개
(19%)만 복수직렬 책정

↳ ① 과장·읍면동장에 복지직 누구나 승진 가능하도록 1년 내 복지
관련 과장·읍면동장 직렬조정 (“행정” → “행정+복지 등”)

- 전북 고창, 대구 중구, 경남 거제 등에서 과장직위 복수직렬 확대 완료

② 읍면동 창구나 시군구 통합조사팀에서 사회복지업무를 3년 이상
장기간 담당하며 업무실적이 탁월한 자는 1호봉 특별승급 확대*

* 1호봉 특별승급(7급 : 月7만원) 담당공무원 범위 2% → 5% 확대(보수지침개정)

하동군 공고 제2014-115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2. 제안 이유

- 2014년도 총액인건비 반영 인력확충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처우개선방안 이행과 보건담당공무원 사기진작 도모
- 관리운영직군(舊사무기능직) 행정직군 전환(1명)에 따른 정원 조정
- 사무운영직렬 불부합 해소

3. 주요 골자

- 군의 정원 총수를 626명(증 9명)으로 조정 (조례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604명→613명(증 9명)
-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급별 정원 조정(조례안 제4조의 별표3)
 - 총계 617명→626명(증 9명)
 - 일반직 계 586명→595명(증 9명)
 - 6급 이하 548명→557명(증 9명)
-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 (규칙안 제2조의 별표)
 - 악양면 : 행정·농업·녹지·시설 5급 1명, 행정·농업·녹지 5급 △1명
 - 적량면 : 행정·사회복지·농업·보건 5급 1명,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5급 △1명
 - 진교면 :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5급 1명, 행정·농업·시설 5급 △1명
 - 옥종면 : 행정·사회복지·농업 5급 1명, 행정·농업 5급 △1명
 - 의회사무과 : 행정 7급 1명, 사무운영 6급 △1명
 - 진교면 : 사무운영 6급 1명, 행정7급 △1명
행정 8급 1명, 사무운영 8급 △1명
 - 재무과 : 행정·세무 9급 3명(증 2명)
 - 주민복지실 : 사회복지 9급 6명(증2명)
 - 황천,고전,청암,양보면 : 사회복지 9급 각각 1명(증 4명)
 - 북천면 : 행정·사회복지 9급 1명(증 1명)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3월 3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055-880-2153, FAX 055-880-2159, e-mail:borisu656@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4. 2. .
제 출 자 : 하동군수

1. 개정이유

- 2014년도 총액인건비 반영 인력확충(순증)
 - 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급여개편) 3명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2명
 - 지역복지전달체계 구축 4명
-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3573(2013.12.31.)

2. 주요내용

- 군의 정원 총수를 626명(증 9명)으로 조정 (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604명→613명(증 9명)
-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4조의 별표3)
 - 총계 617명→626명(증 9명)
 - 일반직 계 586명→595명(증 9명)
 - 6급 이하 548명→557명(증 9명)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등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나. 예산조치 : 추가경정예산편성시 확보(예정)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 라.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4. 02월중/20일간
 - 나) 예고방법 : 하동군 공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
 - 2) 규제심사
 - 3) 비용추계 : 별첨 참조
 - 4) 성별영향분석 평가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본문 중 “617명”을 “62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04명”을 “613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23) 제 395 호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총 계		626	-						
정무직 계		1	-						
군수		1	1						
일반직 계		595	-						
4급		1	1						
4급~5급		3	2		1				
5급		34	12	2	1	4	2	1	12
6급 이하 계		557	-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1		1					
6급 상당		2	-						
연구직 계		2	-						
연구관		-							
연구사		2	-						
지도직 계		25	-						
지도관		-							
지도사		25	-						

하 동 군 공 보

(24) 제 395 호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17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604명 2.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626명 ----- ----- 1. ----- : 613명 2. (현행과 같음)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총 계		617	-							총 계		626	-						
정무직 계		1	-							정무직 계		1	-						
군수		1	1							군수		1	1						
일반직 계		586	-							일반직 계		595	-						
4급		1	1							4급		1	1						
4급~5급		3	2		1					4급~5급		3	2		1				
5급		34	12	2	1	4	2	1	12	5급		34	12	2	1	4	2	1	12
6급 이하 계		548	-							6급 이하 계		557	-						
별정직 계		3	-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1		1						5급 상당		1		1					
6급 상당		2	-							6급 상당		2	-						
연구직 계		2	-							연구직 계		2	-						
연구관		-								연구관		-							
연구사		2	-							연구사		2	-						
지도직 계		25	-							지도직 계		25	-						
지도관		-								지도관		-							
지도사		25	-							지도사		25	-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총 정원 9명 증원으로 정원의 총수 변경(안 제2조)
 - 맞춤형 급여체계개편 3명, 소득세 독립세 전환 2명, 맞춤형지역복지전달체계개선 4명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5년간) -----금1,271,772천원

- 맞춤형 급여개편 총원(3명) 인건비(보조) : 금423,362천원
- 기타 총원(6명) 인건비(자체) : 금848,410천원
 - 소득세 독립세 전환 2명, 맞춤형지역복지전달체계개선 4명

나. 추계의 결과

- 맞춤형 급여체계개편 총원(3명)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세출	인건비	45,000	91,800	93,636	95,508	97,418	423,362
	소계(a)	45,000	91,800	93,636	95,508	97,418	423,362
세입	국고보조금 (70%)	31,500	64,260	65,545	66,856	68,193	296,424
	지방교부세 (30%)	13,500	27,540	28,091	28,652	29,225	127,038
	소계(b)	45,000	91,800	93,636	95,508	97,418	423,462

하 동 군 공 보

(26) 제 395 호

※1차년도 비용은 '14년도 하반기 발생비용 추계임

※9급 3호봉 연평균 인건비기준 : 30,000천원

※연도별 평균 봉급 인상분 2.0%추가 적용

○ 기타충원(6명)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세출	인건비	90,000	184,000	187,680	191,430	195,300	848,410
세입	자체예산	90,000	184,000	187,680	191,430	195,300	848,410

※1차년도 비용은 '14년도 하반기 발생비용 추계임

※9급 3호봉 연평균 인건비기준 : 30,000천원

※연도별 평균 봉급 인상분 2.0%추가 적용

3. 부대의견

- 정부 140대 국정과제인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편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인력충원
-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의 세원발굴·징수 및 부과를 위한 인력충원

4. 작성자 : 행정과장 김상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합계
재원조달		135,000	275,800	281,316	286,938	292,718	1,271,772
의존 재원	소계	45,000	91,800	93,636	95,508	97,418	423,362
	보조금	31,500	64,260	65,545	66,856	68,193	296,354
	지방교부세	13,500	27,540	28,091	28,652	29,225	127,008
자체 수입	소계	90,000	184,000	187,680	191,430	195,300	848,410
	지방세	90,000	184,000	187,680	191,430	195,300	848,410
	세외수입						
지방채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충원되는 사회복지직 인력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의 보조금 및 총액인건비와 연계한 지방교부세로 충원
- 기타 자체충원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로 충원

3. 부대의견

- 정부 140대 국정과제인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편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인력충원
-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의 세원 발굴·부과 및 징수를 위한 인력충원

4. 협의사항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5. 작 성 자 : 행정과장 김상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4. 2. .
제 출 자 : 하동군수

1. 개정이유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처우개선방안 이행과 보건담당공무원 사기진작 도모
- 2014년도 총액인건비 반영 인력확충(순증)
 - 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급여개편) 3명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2명
 - 지역복지전달체계 구축 4명
- 관리운영직군(舊사무기능직) 행정직군 전환(1명)에 따른 정원 조정
- 사무운영직렬 불부합 해소

2. 주요내용

-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 (안 제2조의 별표)
 - 악양면 : 행정·농업·녹지·시설 5급 1명, 행정·농업·녹지 5급 △1명
 - 적량면 : 행정·사회복지·농업·보건 5급 1명,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5급 △1명
 - 진교면 :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5급 1명, 행정·농업·시설 5급 △1명
 - 옥종면 : 행정·사회복지·농업 5급 1명, 행정·농업 5급 △1명
 - 의회사무과 : 행정 7급 1명, 사무운영 6급 △1명
 - 진교면 : 사무운영 6급 1명, 행정7급 △1명
 행정 8급 1명, 사무운영 8급 △1명
 - 재무과 : 행정·세무 9급 3명(증 2명)
 - 주민복지실 : 사회복지 9급 6명(증2명)
 - 횡천,고전,청암,양보면 : 사회복지 9급 각각 1명(증 4명)
 - 북천면 : 행정·사회복지 9급 1명(증 1명)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해당없음

나. 합 의 : 기획감사실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4. 02월중

나) 예고방법 : 하동군 공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

2) 규제심사

3) 비용추계

4) 성별영향분석 평가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31) 제 395 호

[별 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총 계		626	267	68	48	9	23	13	21	177	
정무	정무직 계	1	1								
	정무직	1	1								
일 반 직	일반직 계	595	263	68	23	9	23	11	21	177	
	4급 소계	1	1								
	서기관	1	1								
	4~5급소계	3	2	1							
	서기관·행정사무관	1	1								
	서기관·행정·사회복지사무관	1	1								
	기술서기관·보건사무관· 간호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	1		1							
	5급 소계	34	12	1	4	1	1	2	1	12	
	행정	3	2					1			
	의무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농업	5	1							4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시설	5	4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농업·수의·지도관	1				1					
	행정·농업·시설	1							1	0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시설·해양수산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보건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농업·지도관	1				1					
	농업·지도관	2				2					

하 동 군 공 보

(32) 제 395 호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 업 소		의 회 사무과	음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일 반 직	6급 소계	156	78	12	7	2	3	2	7	45
	행정	14	13	1						
	세무	1	1							
	녹지	1	1							
	해양수산	1	1							
	보건진료	5		5						
	환경	2	2							
	시설	7	7							
	운전	4	2					1	1	
	행정·세무	12	5						1	6
	행정·사회복지	5	5							
	행정·농업	28	9		3			1	1	14
	행정·녹지	3								3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13	12							1
	전산·방송통신	1	1							
	농업·녹지	3	2		1					
	농업·수의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4								4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행정·세무·농업	5	2		1					2
	행정·세무·시설	3	2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전산·농업	3	2						1	
	행정·전산·시설	2	1							1
	공업·환경·보건	1						1		
	행정·공업·시설	4	2			1				1
	행정·농업·녹지	3	1		1					1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시설	5				1				4
	행정·해양수산·시설	2	1							1
	행정·보건·간호	4		3						1
	행정·해양수산·보건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행정·공업·환경·시설	4	2					2			
행정·농업·녹지·환경	2	1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1							
사무운영	3							1	2	

하 동 군 공 보

(33) 제 395 호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음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일 반 직	7급 소계	180	77	19	7	3	5	5	9	55
	행정	19	12			1		3	1	2
	세무	2	2							
	전산	2	2							
	사회복지	8	2						1	5
	속기	2						2		
	공업	1	1							
	농업	1			1					
	녹지	1	1							
	해양수산	3	3							
	시설	15	8				2		1	4
	의료기술	4		4						
	보건	2		2						
	보건진료	6		6						
	환경	2	2							
	운전	11	3	2					2	4
	행정·세무	5	3							2
	행정·사회복지	5	4							1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20	4						2	14
	행정·시설	15	10			1				4
	행정·환경	1	1							
	행정·방송통신	1								1
	공업·환경	1	1							
	농업·농촌지도사	2				2				
	농업·수의	2				2				
	보건·약무	1		1						
	보건·환경	1		1						
	행정·세무·농업	3	1							2
	행정·세무·시설	3	1							2
	행정·전산·농업	3	2							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3	2							1
	행정·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보건	1								1
	행정·농업·시설	10	7							3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환경	1								1
	행정·환경·시설	2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보건·환경	2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3		3						
행정·공업·보건·환경	2						1		1	
통신운영	1							1		
전화상담운영	1								1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1						1			
선박항해운영	1	1								
사무운영	4				1		1		2	

하 동 군 공 보

(34) 제 395 호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일 반 직	8급 소계	148	62	33	3	2		2	3	43
	행정	14	9					2		3
	세무	1	1							
	사회복지	8	2						1	5
	방호	1			1					
	공업	1			1					
	해양수산	1	1							
	보건	10		10						
	간호	1		1						
	의료기술	9		9						
	보건진료	4		4						
	식품위생	2		2						
	환경	1	1							
	시설	8	4							4
	시설관리	3	3							
	운전	9	2		1					6
	행정·세무	4	4							
	행정·사회복지·시설	7	2						1	4
	행정·전산	3	3							
	행정·농업	12	5							7
	행정·해양수산·시설	4	2							2
	행정·시설	5	4				1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환경	2	2							
	농업·녹지	3	3							
	행정·보건·간호	4		4						
	약무·보건	1		1						
	행정·세무·농업	8	1							7
	행정·농업·시설	6	4							2
	행정·보건·환경	3							1	2
	행정·공업·시설	5	4				1			
	보건·간호·의료	2		2						
	일관리운영	1	1							
선박기관운영	1	1								
사무운영	2	1							1	

하 동 군 공 보

(35) 제 395 호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일 반 직	9급 소계	73	31	2	2	1	14		1	22
	행정	3	2				1			
	사회복지	16	6							10
	환경	2	2							
	운전	3	1							2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6	2						1	3
	행정·농업	4	2							2
	행정·시설	9	8			1				
	농업·녹지	1	1							
	농업·수의	2			2					
	보건·간호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3	1							2
	행정·환경·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전기운영	3	1				2			
	기계운영	3					3			
화공운영	4					4				
선박항해운영	1	1								
보건운영	4					4				

하 동 군 공 보

(36) 제 395 호

구분	기관별 직급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상하수도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별 정 직	별정직 계	3	1				2		
	5급 상당 소계	1					1		
	행정·별정	1					1		
	6급 상당 소계	2	1				1		
	비서	1	1						
	의회전문위원	1					1		
연 구 직	연구직 계	2	2						
	학예연구사	1	1						
	기록연구사	1	1						
지 도 직	지도직 계	25			25				
	농촌지도사	25			25				

신 · 구조 대문비표

현											개정안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직속기관		사업소			음	변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직속기관		사업소			음	변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본청	보건소		
총 계			617	263	68	48	9	23	13	21	172	총 계			626	267	68	48	9	23	13	21	172
정무	정무직 계		1	1								정무	정무직 계		1	1							
	정무직		1	1									정무직		1	1							
일반직	일반직 계		586	259	68	23	9	23	11	21	172	일반직 계		595	263	68	23	9	23	11	21	172	
	4급 소계		1	1								4급 소계		1	1								
	서기관		1	1								서기관		1	1								
	4~5급소계		3	2	1							4~5급소계		3	2	1							
	서기관·행정사무관		1	1								서기관·행정사무관		1	1								
	서기관·행정·사회복지사무관		1	1								서기관·행정·사회복지사무관		1	1								
	기술서기관·보건의사부관·간호사부관·의료기술사부관		1		1							기술서기관·보건의사부관·간호사부관·의료기술사부관		1		1							
	5급 소계		34	12	1	4	1	1	2	1	12	5급 소계		34	12	1	4	1	1	2	1	12	
	행정		3	2					1			행정		3	2					1			
	의무		1		1							의무		1		1							
	시설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행정·농업		6	1							5	행정·농업		5	1								4
	행정·시설		5	4			1					행정·시설		5	4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농업·녹지		3	1							2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농업·수의·지도관		1			1						행정·농업·수의·지도관		1			1						
	행정·농업·시설		2						1		1	행정·농업·시설		1						1			0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시설·해양수산		1									행정·농업·시설·해양수산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환경		1	1								행정·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농업·지도관		1			1						행정·농업·지도관		1			1						
	농업·지도관		2			2						농업·지도관		2			2						

하 동 군 공 보

(38) 제 395 호

현											개 정 안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 업 소			의 회 사 부 과	음	변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 업 소			의 회 사 부 과	음	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일 반 직	6급 소계		156	78	12	7	2	3	3	7	44		6급 소계		156	78	12	7	2	3	2	7	45					
	행정		14	13	1								행정		14	13	1											
	세무		1	1									세무		1	1												
	녹지		1	1									녹지		1	1												
	해양수산		1	1									해양수산		1	1												
	보건진료		5		5								보건진료		5		5											
	환경		2	2									환경		2	2												
	시설		7	7									시설		7	7												
	운전		4	2						1	1		운전		4	2						1	1					
	행정·세무		12	5								1	6	행정·세무		12	5							1	6			
	행정·사회복지		5	5										행정·사회복지		5	5											
	행정·농업		28	9		3				1	1	14	행정·농업		28			3				1	1	14				
	행정·녹지		3									3	행정·녹지		3									3				
	행정·환경		2	2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13	12								1	행정·시설		13	12									1			
	전산·방송통신		1	1									전산·방송통신		1	1												
	농업·녹지		3	2		1							농업·녹지		3	2		1										
	농업·수의		1			1							농업·수의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4									4	행정·사회복지·농업		4										4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행정·세무·농업		5	2		1						2	행정·세무·농업		5	2		1							2			
	행정·세무·시설		3	2							1		행정·세무·시설		3	2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전산·농업		3	2								1	행정·전산·농업		3	2									1			
	행정·전산·시설		2	1								1	행정·전산·시설		2	1									1			
	공업·환경·보건		1					1					공업·환경·보건		1						1							
	행정·공업·시설		4	2				1				1	행정·공업·시설		4	2				1					1			
	행정·농업·녹지		3	1		1						1	행정·농업·녹지		3	1		1							1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시설		5					1				4	행정·농업·시설		5					1					4			
	행정·해양수산·시설		2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1									1			
	행정·보건·간호		4		3							1	행정·보건·간호		4		3								1			
	행정·해양수산·보건		1									1	행정·해양수산·보건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행정·공업·환경·시설		4	2				2					행정·공업·환경·시설		4	2						2						
	행정·농업·녹지·환경		2	1								1	행정·농업·녹지·환경		2	1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1											
	사무운영		3							1	1	1	사무운영		3							0	1	2				

하 동 군 공 보

(39) 제 395 호

현												개 정 안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	면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일 반 직	7급 소계		180	77	19	7	3	5	4	9	56	7급 소계		180	77	19	7	3	5	4	9	56	
	행정		19	12			1		2	1	3	행정		19	12			1		2	1	3	
	세무		2	2								세무		2	2								
	전산		2	2								전산		2	2								
	사회복지		8	2						1	5	사회복지		8	2							1	5
	숙기		2						2			숙기		2						2			
	공업		1	1								공업		1	1								
	농업		1			1						농업		1			1						
	녹지		1	1								녹지		1	1								
	해양수산		3	3								해양수산		3	3								
	시설		15	8				2		1	4	시설		15	8			2		1	4		
	의료기술		4		4							의료기술		4		4							
	보건		2		2							보건		2		2							
	보건진료		6		6							보건진료		6		6							
	환경		2	2								환경		2	2								
	운전		11	3	2					2	4	운전		11	3	2				2	4		
	행정·세무		5	3							2	행정·세무		5	3						2		
	행정·사회복지		5	4							1	행정·사회복지		5	4						1		
	행정·공업		1	1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20	4						2	14	행정·농업		20	4					2	14		
	행정·시설		15	10			1				4	행정·시설		15	10			1			4		
	행정·환경		1	1								행정·환경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방송통신		1							1		
	공업·환경		1	1								공업·환경		1	1								
	농업·농촌지도사		2			2						농업·농촌지도사		2			2						
	농업·수의		2			2						농업·수의		2			2						
	보건·약무		1		1							보건·약무		1		1							
	보건·환경		1		1							보건·환경		1		1							
	행정·세무·농업		3	1							2	행정·세무·농업		3	1						2		
	행정·세무·시설		3	1							2	행정·세무·시설		3	1						2		
	행정·전산·농업		3	2							1	행정·전산·농업		3	2						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3	2							1	행정·농업·녹지		3	2						1		
	행정·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보건		1								1	행정·농업·보건		1							1		
	행정·농업·시설		10	7							3	행정·농업·시설		10	7						3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환경		1								1	행정·농업·환경		1							1		
	행정·환경·시설		2	1							1	행정·환경·시설		2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보건·환경		2							1	1	행정·보건·환경		2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3		3							보건·간호·의료기술		3		3								
행정·공업·보건·환경		2					1			1	행정·공업·보건·환경		2				1			1			
통신운영		1							1		통신운영		1							1			
전화상담운영		1								1	전화상담운영		1							1			
전기운영		1	1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1					1				기계운영		1					1					
선박항해운영		1	1								선박항해운영		1	1									
사무운영		4			1		1			2	사무운영		4			1		1		2			

하 동 군 공 보

(40) 제 395 호

현 행											개 정 안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	면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일 반 직	8급 소계		148	62	30	3	2		2	3	43	8급 소계		148	62	33	3	2		2	3	43	
	행정		13	9					2		2	행정		14	9					2		3	
	세무		1	1								세무		1	1								
	사회복지		8	2							1	5	사회복지		8	2						1	5
	방호		1			1							방호		1			1					
	공업		1			1							공업		1			1					
	해양수산		1	1									해양수산		1	1							
	보건		10		10								보건		10		10						
	간호		1		1								간호		1		1						
	의료기술		9		9								의료기술		9		9						
	보건진료		4		4								보건진료		4		4						
	식품위생		2		2								식품위생		2		2						
	환경		1	1									환경		1	1							
	시설		8	4								4	시설		8	4							4
	시설관리		3	3									시설관리		3	3							
	운전		9	2		1						6	운전		9	2		1					6
	행정·세무		4	4									행정·세무		4	4							
	행정·사회복지·시설		7	2							1	4	행정·사회복지·시설		7	2						1	4
	행정·전산		3	3									행정·전산		3	3							
	행정·농업		12	5								7	행정·농업		12	5							7
	행정·해양수산·시설		4	2								2	행정·해양수산·시설		4	2							2
	행정·시설		5	4			1						행정·시설		5	4		1					
	전산·방송통신		2	2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환경		2	2									공업·환경		2	2							
	농업·농지		3	3									농업·농지		3	3							
	행정·보건·간호		4		4								행정·보건·간호		4		4						
	약무·보건		1		1								약무·보건		1		1						
	행정·세무·농업		8	1								7	행정·세무·농업		8	1							7
	행정·농업·시설		6	4								2	행정·농업·시설		6	4							2
	행정·보건·환경		3								1	2	행정·보건·환경		3						1	2	
	행정·공업·시설		5	4			1						행정·공업·시설		5	4		1					
	보건·간호·의료		2		2								보건·간호·의료		2		2						
열관리운영		1	1									열관리운영		1	1								
선박기관운영		1	1									선박기관운영		1	1								
사무운영		3	1								2	사무운영		3	1							1	

하 동 군 공 보

(41) 제 395 호

현												개 정 안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	면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일 반 직	9급 소계		64	27	2	2	1	14	0	1	17	9급 소계		73	31	2	2	1	14	0	1	22			
	행정		3	2			1					행정		3	2			1							
	사회복지		10	4							6	사회복지		16	6									10	
	환경		2	2								환경		2	2										
	운전		3	1							2	운전		3	1										2
	행정·세무		1	1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5	2							1	2	행정·사회복지		6	2							1	3	
	행정·농업		4	2								2	행정·농업		4	2									2
	행정·시설		9	8			1						행정·시설		9	8			1						
	농업·녹지		1	1									농업·녹지		1	1									
	농업·수의		2			2							농업·수의		2			2							
	보건·간호		1		1								보건·간호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3	1								2	행정·농업·녹지		3	1									2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환경·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전기운영		3	1				2					전기운영		3	1				2					
	기계운영		3					3					기계운영		3					3					
	화공운영		4					4					화공운영		4					4					
	선박항해운영		1	1									선박항해운영		1	1									
	보건운영		4					4					보건운영		4					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99호, 2013.12.4,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자치제도과) 02-2100-376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59조·제90조와 제1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총액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2항의 총액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총액인건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장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12.4>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 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하 동 군 공 보

(44) 제 395 호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13.12.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동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기구와 정원규칙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7.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하 동 군 공 보

(46) 제 395 호

인쇄 : 남기봉 / 행정과 (2014-02-01 14:10:15)

정부3.0 경남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경 상 남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통보

1.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3573(2013.12.31.)과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총액인건비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4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통보문 및 산정결과 각 1부. 끝.

경 상 남 도 자 사

수신자 창원시장(인사조직과장), 진주시장(총무과장), 통영시장(안전행정과장), 사천시장(총무과장), 김해시장(총무과장), 밀양시장(행정과장), 거제시장(행정과장), 양산시청(안전행정과장), 의령군수(행정과장), 함안군수(행정과장), 창녕군수(행정과장), 고성군수(행정과장), 함해군수(행정과장), 하동군수(행정과장), 산청군수(안전행정과장), 함양군수(행정과장), 거창군수(행정과장), 합천군수(안전행정과장)

주무관 박해순 조직관리담당 정준석 기획조정담당 박일동 기획조정실장 허성근 전결 2014. 1. 2.

협조자

시행 정책기획관-14 (2014. 1. 2.) 접수 행정과-100 (2014. 1. 2.)

우 641-70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시림동, 경상남도청) / http://www.gsnd.net

전화번호 055-211-2424 팩스번호 055-211-2319 / tltooyee@korea.kr / 대국민 공개

주소 하나로 빠르고 편리한 생활, 이제 도로명주소입니다.

문서관리카드 행정과-100 1/1

2014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조직관리기준_지자체 통보)

(단위 : 명,천원)

자치단체	2014년 총액인건비	공무원					
		인건비	일반직 인력	인건비	소방직 인력	인건비	복지직 인력
	A+B+C+D	A		B		C	
경 상 남 도	316,408,426	157,587,817	2,221	144,674,482	2,218		
경남창원시	337,945,134	242,703,322	3,891	41,158,520	631	1,591,129	60
경남진주시	121,948,240	107,457,386	1,640			765,100	29
경남통영시	65,725,243	58,488,747	905			406,164	15
경남사천시	64,958,458	55,170,487	852			439,323	16
경남김해시	105,488,044	92,090,127	1,478			905,488	34
경남밀양시	63,139,479	57,666,560	893			439,323	16
경남거제시	74,891,506	65,553,303	1,047			424,323	15
경남양산시	67,423,410	57,446,488	984			594,712	22
경남의령군	38,482,670	35,041,336	570			218,547	8
경남함안군	40,676,609	36,839,416	601			295,776	11
경남창녕군	47,856,204	42,495,375	673			295,776	11
경남고성군	44,803,889	39,469,865	641			295,776	11
경남남해군	40,524,258	33,300,488	555			280,776	10
경남하동군	43,739,521	38,217,026	620			328,935	12
경남산청군	39,550,958	36,007,150	569			280,776	10
경남함양군	40,601,550	35,924,538	580			280,776	10
경남거창군	46,732,392	41,610,922	657			328,935	12
경남합천군	51,672,571	45,947,083	738			358,935	13

하 동 군 공 보

(48) 제 395 호

정부3.0, 국민과의 약속



안 전 행 정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처우개선방안 시달

1. 항상 우리 부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3. 7. 30 제3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처우 개선방안 및 지자체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시달('13. 8. 14 전달회의 기 실시)하오니 각 시·도 주관으로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부처 합동 점검 예정

3. 아울러, 시·도에서는 세부추진계획(시·군·구 계획취합)을 '13. 8. 30(금)까지 우리 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합서식 : 별도 송부

붙임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처우개선방안 및 지자체 조치사항 1부. 끝.

안전행정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인사과장), 부산광역시(정책기획담당관), 부산광역시(총무과장), 대구광역시(정책기획관), 대구광역시(총무인력과장), 인천광역시(정책기획관), 인천광역시(총무과장), 광주광역시(창조도시정책기획관), 광주광역시(총무과장), 대전광역시(정책기획관), 울산광역시(기획관), 울산광역시(총무과장), 세종특별자치시(인사조직담당관), 경기도지사(기획담당관), 경기도지사(인사과장), 강원도지사(총무과장), 강원도지사(자치정책과장), 충청북도지사(총무과장), 충청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 충청남도지사(총무과장), 충청남도지사(자치행정과장), 전라북도지사(정책기획관), 전라북도지사(행정지원관), 전라남도지사(인력관리과장), 경상북도지사(정책기획관), 경상북도지사(인재양성과장), 경상남도지사(정책기획관), 경상남도지사(인사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총무과장)

주무관	장익상	행정사무관	나체욱	서기관	박경태	자치제도과장	전결 2013. 8. 20 이범석
협조자	지방공무원과장	이성민					
시행	자치제도과-1940		(2013. 8. 20.)	접수	정책기획관-7930		(2013. 8. 20.)
우	110-760	서울 중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3호				/ http://www.mospa.go.kr
전화번호	02-2100-3769	팩스번호	02-2100-4227		/ kantjang@mospa.go.kr		/ 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2. 복지담당공무원 처우 개선 방안

1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

① 인사상 사기진작 강화

- 지난 3. 29 시행 「지자체 사회복지인력운영 개선대책」에 따라, 특수
업무수당 3만원(복지사 자격증 가산금 3만원 별도) → 7만원 인상(6월)
- 지자체별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지급가점 부여, 전보희망부서
우선배치, 정기포상 우선포함 등 다각적 대책 추진 중
- 다만, 시군구 복지 관련 과장 및 읍면동장 직위가 행정직 중심
(81%)으로 운영되어 승진기회 제약
- 민원을 응대하는 현장부서(읍면동 창구, 시군구 통합조사팀)에 장기
근무해야함에 따라 사기 저하
- * 시군구 전체 복지관련 5급 과장 및 읍면동장 직위 4,094개 중 785개
(19%)만 복수직렬 책정

⇒ ① 과장·읍면동장에 복지직 누구나 승진 가능하도록 1년 내 복지
관련 과장·읍면동장 직렬조정 (“행정” → “행정+복지 등”)

- 전북 고창, 대구 중구, 경남 거제 등에서 과장직위 복수직렬 확대 완료

② 읍면동 창구나 시군구 통합조사팀에서 사회복지업무를 3년 이상
장기간 담당하며 업무실적이 탁월한 자는 1호봉 특별승급 확대*

* 1호봉 특별승급(7급 : 月7만원) 담당공무원 범위 2% → 5% 확대(보수지침개정)

하 동 군 공 보

(50) 제 395 호


하동군 공고 제2014 -122호

공 고

하동군공인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폐기공인을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인 폐기일 : 2014. 2. 21
2. 폐기사유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2012. 10. 22 법률 제11514호)
3. 폐기 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영		비고
			신조	폐기	
폐기 공인	전대리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인	한글전서체 2.2cm 정사각형			

4. 신조공인 사용일 : 2014. 2. 21(공고 후)

2014년 2월 일

하 동 군 수

경상남도 공고 제2014-249호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모집 공고

경상남도에서는 예산편성과정에의 도민참여 보장과 재정운용의 민주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주민을 대표하여 고견을 주실 위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있는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 2월 18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모집인원 : 22명(여성8명 포함, 3개 권역별 구분모집)
 - 중부 : 9명(창원, 통영, 거제, 의령, 함안, 창녕, 고성 : 여성 3명 포함)
 - 동부 : 4명(김해, 밀양, 양산 : 여성 2명 포함)
 - 서부 : 9명(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 여성 3명 포함)
2. 모집기간 : 2014. 2. 18 ~ 2. 27(10일간)
3.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만19세 이상의 주민
4. 응모방법 : 모집기간내 소정의 신청서("첨부") 작성 접수
 - 접 수 처 :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실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E-mail, FAX이용(전화신청 불가)
 - FAX : 055-211-2359, E-mail : oks0410@korea.kr
 - 우편: (641-702)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예산담당관실
 - ※ 접수최종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우편접수 포함)
 - 문 의 :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실(☎ 211-2356)
5.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경력증명, 표창장 사본 등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정보제공 동의서) 1부

(※ 주소지 조회, 지방세 체납, 범죄경력 등 확인용)

6. 선정기준

① 응모자가 모집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 ▶ 응모자가 모집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타 선발요건 (추천)에서 정한 대상자와 자격요건이 중복되지 않는 자를 순차적 선발
 - i) 예산활동 유 경험자 또는 재정분야 전문가
 - ii) 여성응모자 우선
 - iii) 사회봉사 및 기여포상실적(도지사 이상)이 있는 자 ⇒ 훈격별 기준, 상장은 제외
 - iv) 모집예정지역 장기 거주자(주소지 등록일 기준)순

② 응모자가 모집 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 ▶ 모집예정인원 미달시 재공고(5일)를 거쳐 추가 선발
- ▶ 재공고를 통한 모집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권역내 시군별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선발

③ 위원 응모자격의 제한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지방세 체납자(모집공고일 현재)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
- 기타 법령에 의한 공무담임권 제한자
- 사회적·도덕적 물의를 야기시켜 주민과 여론의 지탄을 받는 자로서 도지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7. 선발결과 발표 : '14. 3. 17(예정)/E-mail 또는 전화 통보

※ 발표일시는 위원 모집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참고사항

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공청회·간담회 등의 개최
- 그 밖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② 분과위원회 배정

- 응모시의 희망분과를 고려하되, 분과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도지사가 지정

[서식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응모신청서

①모집구분		공개()	추천()	②거주지역		
신청자 인적사항	③성명				④생년월일	-
	⑤주소					
	⑥연락처	자택		직장		
		휴대전화		E-mail		
주요경력						
참여희망 분과	㉠산업경제분과() ㉡농해양수산분과() ㉢환경산림분과() ㉣도시건설소방분과() ㉤문화관광분과() ㉥복지여성분과() ※ 제1희망부터 제3희망분과까지 아래 해당란에 기재					
	제1희망		제2희망		제3희망	

위 본인은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모집요건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응모합니다.

2014. 2.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서식 2]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응모자로서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위원 자격요건 또는 기타 제출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2014년 2 월 일

성 명 :

생년월일 : . . .

서 명 :

경상남도지사 귀하